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. 12. 13 선고 2023가단128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]

---

### 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4. 10. 23 선고 2024나300622 판결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. 12. 13 선고 2023가단1282 판결

### 전문

원 고 A

피 고 한국농어촌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

담당변호사 구인호

변 론 종 결 2023. 11. 29.

판 결 선 고 2023. 12. 13.

### 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답 2025평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. 6. 16. 접수 제341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전제되는 사실관계

원고는 1975. 7. 23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. 12. 4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피고는 2010. 6. 16.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. 6. 1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,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46059 판결,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23591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, 피고는 그 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, 이러한 추정력은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깨어지지 않는다. 따라서 피고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은 여전히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.

이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내용증명(갑 3호증의1, 2)과 진정서(갑 4호증)

등이 있는데, 내용증명과 진정서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소송에 즈음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.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(갑 5, 6호증)는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였다는 점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. 결론적으로,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만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.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.

판사 권기백